



協力議定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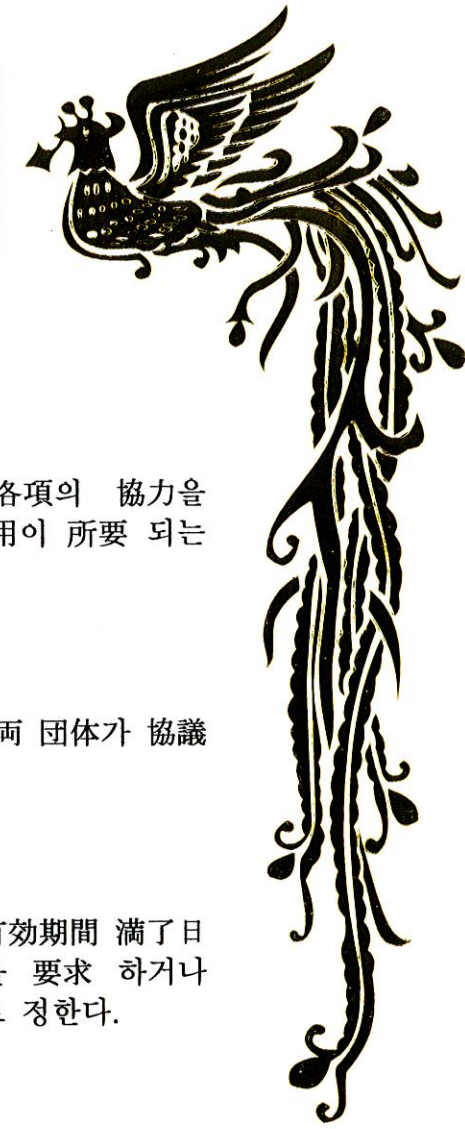
在日韓国商工会議所(Korean Chamber of Commerce & Industry in Japan)와 中国韓国商会(Korea Chamber of Commerce in China)는 日本과 中国의 兩 經濟団体 및 각각의 會員社의 經濟交流 및 理解增進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協力議定書を 締結한다.

第1条 (目的)

이 協力議定書는 在日韓国商工会議所와 中国韓国商会의 相互 交流와 理解를 增進하고 業務協力에 관한 事項을 協議하여 相互 協助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条 (協力の 内容 및 範圍)

- 1) 在日韓国商工会議所와 中国韓国商会는 兩 団体が 保有하는 日本과 中国地域의 貿易振興 및 經濟協力에 관한 情報를 相互 提供한다.
- 2) 在日韓国商工会議所와 中国韓国商会는 兩 団体が 施行하는 會議의 開催, 使節團의 派遣 및 迎接, 日本 또는 中国 地域에 進出한 企業에 대한 支援, 調査 및 研究, 研修 등의 事業에 관하여 相互協力한다.
- 3) 在日韓国商工会議所와 中国韓国商会는 兩 団体が 發行하는 刊行物 및 各種資料를 相互 提供한다.
- 4) 在日韓国商工会議所와 中国韓国商会는 兩 団体の 公式 절차를 거쳐서 交流・協력이 增進되도록 相互協助한다.
- 5) 在日韓国商工会議所와 中国韓国商会는 會員社에 대하여 상대방의 事業을 積極적으로 알림으로써 會員社가 이를 活用 할 수 있도록 한다.
- 6) 在日韓国商工会議所와 中国韓国商会는 第1項과 第5項에 明示되지 않았으나, 이 議定書의 目的에 付合하는 事項에 最大限 相互 協力한다.



第3条 (費用의 負擔)

在日韓国商工会議所와 中国韓国商会는 第2条 各項의 協力を 위해 必要한 費用을 各自負擔한다. 다만, 別途의 費用이 所要 되는 경우 兩 団体が 協議하여 別途로 定한다.

第4条 (細部事項)

이 議定書를 實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細部事項은 兩 団体が 協議하여 別途로 定한다.

第5条 (有効期間)

이 議定書의 有効期間은 2 年으로 定한다. 다만, 有効期間 滿了日 까지 어느 一方이 書面에 의하여 議定書의 變更을 要求 하거나 解除하지 않는 경우 自動으로 2 年間 延長되는 것으로 定한다.

第6条 (効力의 發生)

이 議定書는 兩 団体の 代表者 또는 代理人이 署名한 날 부터 効力이 發生한다.

第7条 (議定書의 保管)

이 議定書는 總 2 部를 作成하여 相互署名한 후 各 1 部씩 保管한다.

2010 年 4 月 27 日

在日韓国商工会議所
會長 崔 鐘 太

中国韓国商会
會長 朴 根 太

崔鐘太

朴根太 4/27

